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립학생회관"으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북도학생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충청북도립학생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관의 운영) 회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청소년의 문예 및 체육활동의 공간제공
2. 도서관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전개
4.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7조중 "총무과에는 서무계, 관리계를 두며 과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로 한다.

제8조 제7호중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상담실, 회의실, 서예실 운영"을 "전시실, 특별활동실, 회의실, 수영장, 로울러스케이팅장 운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휴관일) ①회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회관시설의 수리,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5조중 " 별표 2에 의한"을 "관장이 정한"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회관의 명칭 및 위치

학생회관명	위 치
충청북도학생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